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인쇄물 제작업체(추가) 등록 공고

2023년도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인쇄물 제작업체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원장 김 봉 수

□ 등록참가자격 및 조건

○ 등록자격 : 공통에 해당하며, 구분 ① 또는 ② 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필요자격
공통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인쇄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라. 진흥원이 제시한 단가계약 조건을 수용한 업체
①	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정한 수요기관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정한 수요기관에 **2천만원 이상의 인쇄물(5개 기관이내 합산 금액)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 납품실적기간 : 2022. 1. 1. ~ 2022. 12. 31.
②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업체**

□ 공고 및 접수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03. 16.(목) ~ 2023. 03. 29(수) 17시까지

○ 접수방법 : 우편접수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대면접수 불가)

○ 접수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70, NH서울타워 20층 경영지원실 조진호 선임연구원

○ 결과발표 : 2023. 04. 05.(수)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 진흥원 일정에 따라 발표일정 조정가능

□ 선정방법

○ 등록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등록업체로 선정

□ 운영방식

○ 계약조건

가. 인쇄단가(경인쇄·옵셋인쇄)

구분	적용방법
2백만원 이하	· 단일견적에 의한 업체 선정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2005년)의 85% 적용 · 일반관리비는 제작원가의 10% 이내, 이윤율은 용지대를 제외한 제작원가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의 10% 이내 요율 적용
2백만원 초과 ~ 20백만원 이하	· 3개업체 비교견적에 의한 최저가 업체 선정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2005년)의 75~85% 적용 · 일반관리비는 제작원가의 14% 이내, 이윤율은 용지대를 제외한 제작원가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의 25% 이내 요율 적용

나. 복사·제본단가 : [첨부] 복사·제본요금 적용

○ 계약해지

가. 인쇄물 결과에 대해 미흡 4회 또는 불량 3회 사업부서 신고 시

나. 인쇄업체가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진흥원이 인정할 때

□ **계약기간 :** 2023년 04월 05일 ~ 2023년 12월 31일

□ **제출서류(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

구분		부수	기타
1	등록신청서	1부	서식1
2	청렴계이행서약서	1부	서식2
3	업체소개자료 (전체인력 현황, 위치 안내도 포함)	1부	-
4	인쇄물 납품실적 내역서 (총괄표)	1부	서식3
5	실적증명서 (최대 5개 기관 / 실적증명서 발급 기관의 양식 사용)	1부	-
6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	-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8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9	장애인기업 / 장애인표준사업장 / 여성기업 / 사회적기업 / 창업기업 확인서 /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 증명서	1부	해당시
10	제출서류 스캔파일(PDF)	1개	USB 또는 CD 제출

□ **추가제출 서류 :** 편집 및 디자인 가능 업체

구분		부수	기타
1	(선택)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증	1부	한국디자인진흥원 발행
2	(필수) 편집 및 디자인 포트폴리오	1부	파일제출(USB)
3	(필수) 실적물	1부	파일제출(USB)

□ **문의처 :** 경영지원실 조진호 선임연구원 (02-736-9837, jjh0413@compa.re.kr)

□ **유의사항**

○ 제출된 관련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부적격업체로 등록하여 향후 각종 등록 및 입찰 참가를 제한함

○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우리 진흥원의 업체 등록자격 및 조건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음

[서식1] 등록신청서

등 록 신 청 서

본(사, 인)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인쇄업체 등록을 위하여 귀 진흥원이 정한 제반 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합니다.

별부서류 :

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기 타 : *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등 해당 업체는 표기 바라며 기재 후 본 문구 삭제*

2023년 월 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2]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용)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 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흥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고
   -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진흥원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귀하

[서식3] 인쇄물 납품 실적 내역서

인쇄물 납품 실적 내역서(총괄표)

□ 업체명 :

연번	납품기관명	납품일자 (계약기간)	연간납품금액(원)	비 고
1				실적증명서 첨부
2				실적증명서 첨부
3				실적증명서 첨부
합계액				

※ 납품기관별 인쇄물 납품실적 증명서(원본) 첨부

- ㅇ 납품실적 인정기관별 '가나다' 순으로 작성하되 1개 납품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합계금액 기입**(부가세 포함 금액)**
- ㅇ 납품기관별 '인쇄물 납품실적 증명서' 에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할 사항
  - 납품명, 납품일, 계약(납품)금액, 발급부서명, 발급자명, 전화번호, 직인 날인
- ㅇ **2022년 5개 기관 실적 첨부**
- ㅇ 실적증명서 양식은 발급 기관의 양식 또는 첨부되어 있는 양식 모두 사용 가능
- ㅇ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리스트 제출

[첨부] 복사·제본요금

복사·제본요금

<복사·제본물 단가 요금표>

(V.A.T. 별도) (단위 : 원)

규 격		복사(면)		제본(권) ＊표지인쇄포함			비고
		단면	양면	소프트	하드	코팅시 추가비용	
일반	A3	59	59	3,629	3,767	1,319	
	A4	31	31	2,711	3,167	715	
	B5	29	29	2,549	2,767	693	
	B4	53	53	3,351	3,600	1,319	
컬러	A4	308	282	2,593	-	767	

※ 상기요금 이외의 사항이 추가될 경우 시중가격에 의한다.

※ A4 일반복사 계산 예시

- 양면 일반 복사 : (20페이지) = 20 × 31
- 단면 일반 복사 : (20페이지) = 20 × 31